

유료 양로시설 크게 늘려야

‘노인문제 학술세미나’서 지적

노인층의 고령화, 자녀들로부터 독립해서 살고 싶어 하는 경제력 있는 노인수의 증가 등으로 유료 양로원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현행법상 설립 및 운영규정이 너무 까다로와 이러한 법적 규제가 완화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한 유료 양로원 설립과 운영은 단순한 노인복지 차원에서 접근하기보다는 노인산업 차원에서 적극 지원 육성하는 등 고령화시대에 대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사회복지법인 제성복지원 주최로 지난 27일 ‘유료 양로시설의 사회적 역할과 과제’라는 주제 아래 열린 노인문제 학술세미나에서 박재간 노인문제연구소 소장, 이윤숙(동덕여대·건강관리학), 성규탁(연세대·사회사업학) 교수 등은 “저소득층을 위한 실비시설과 함께 경제력 있는 노인들을 위한 유료시설이 대폭 늘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사부 통계에 따르면 89년말 현재 우리나라의 60살 이상 노인인구는 3백18만명으로 전체인구의 7.4%를 차지한다. 그러나 전국에 유료 양로원은 1개, 무의탁 노인을 위한 무료 양로원은 83곳 뿐이다.

현재 돈을 받고 운영중인 유일한 유료 양로원인 수원시 조원동

에 있는 ‘유당마을’의 경우 88년 7월1일 문을 연 이래 현재 할아버지 15명, 할머니 35명이 살고 있어 3백18만 노인인구 가운데 50명만이 유료 양로시설에 수용돼 있는 셈이다.

이밖에 ‘유당마을’ 바로 옆에 경제력있는 노인들을 겨냥 80명 수용의 유료양로원 개관준비를 하고 있는 ‘성지원’은 1인실의 경우 보증금 3천만원에 월 수납액 40만원을 받아야 적자를 면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어 고시가격 24만원의 조정여부에 따라 개관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노인회가 집계한 통계에 따르면 자녀와 함께 살지 않고 따로 살기를 원하는 노인, 자녀 또는 고부간의 갈등 등으로 인해

무의탁 노인을 위한 무료 양로원 못지 않게 따로 살고 싶어하는 경제력 있는 노인들을 위한 유료 양로원이 대폭 늘어나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따로 살고 싶어하는 노인들이 늘어나는 추세에 맞춰 유료 양로원이 적어도 1백개 정도는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건강한 노인, 몸이 불편한 노인, 경제력이 있는 노인을 위한 고급 양로원과 중급 양로원 등이 다양하게 설립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3만여명이 넘는 무의탁 노인들을 위한 무료 양로원도 4백개 이상 세워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소장과 이 교수, 성 교수 등은 유료 양로원의 활성화를 위

현행법 ‘민간자본 참여’ 길 막아 고령화 추세 맞춰 적극지원 필요

60세이상 노인 전체인구의 7.4%...‘유료’는 1곳뿐

별거하지 않으면 안되는 노인은 1만명을 웃돌고, 무의탁 노인이 3만여명에 이른다.

박재간 소장은 “해가죽화가 심화되고, 경제적으로 여유도 있고

해 △현행법상 국가와 비영리법인 등만이 유료 양로원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한 규제를 풀고 △민간자본이 노인아파트·유료 양로원 등 노인전용 주거시설

에 투자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하며 △노인산업의 적극적인 개발 △유료 양로원비의 자율적인 조정 허용 △민간의 유료 양로원 설립을 가로

막는 까다로운 법적 규제장치가 완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우리나라 노인복지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과 비영리법인만이 유료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을 뿐 아니라 시설운영 주체가 운영비의 20% 안팎을 떠맡아야 한다. 또한 입주자로부터 받는 월수납액(1인용 24만원, 2인용 40만원)과 보증금(월수납액의 2년분 이상 징수 금지)도 정부의 규정에 묶여 있다. <신연숙 기자>

